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삭제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법 제5조제4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2조를 삭제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재정추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안 제3조 개정)

시행령 제2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구 및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

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 확대(안 제15조제8항 개정)

사전협의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에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절차 등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평가방법·절차 구체화 등
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삭제 및
안 제22조 신설)

법 제32조의2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2를 삭제하고, 법 제44조
신설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바.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요청자료 범위 규정(안 제18조
의3 신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이하 “제도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제도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방향,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 대상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추계의 세부 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재정추계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 재정전망 자료
2.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4.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5. 「군인연금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자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전망 자료
9. 그 밖에 재정추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절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3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요금감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감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한 진료비 등 사회보장 지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신요금감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0.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이 관리하는 세입·세출 정보

1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OECD)」 제3조 회원국 합의사항에 따라 OECD에 제출하는 영유아교육 재정, 국민보건계정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따른 후원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3. 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 세부지침에는 재정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	<삭제>

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삭 제>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 「사회보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회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 ⑦ (생략)

⑧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2. (생략)

<신 설>

<신 설>

변경에 대한 협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2. (현행과 같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이하 “제도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

<신 설>

두된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제도평가 대상을 선
정하고, 평가방향, 평가기준, 평
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 대상사업의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
의3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
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
추계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
진체계, 공표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 재정전망 자료
2.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4.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5. 「군인연금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자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전망 자료
9. 그 밖에 재정추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기관) 법 제32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절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의3(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요금감면 관련 자료 또는 정

보

6.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감면 관
련 자료 또는 정보
7.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
른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관
련 자료 또는 정보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한 진료비
등 사회보장 지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
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른 통신요
금감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0.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76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이 관리하는 세입·세출 정보
1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OECD)」 제3조 회원국
합의사항에 따라 OECD에 제
출하는 영유아교육 재정, 국민
보건계정 관련 자료 또는 정
보
1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신 설>

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20조에 따른 후원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3. 그 밖에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3718